

의안번호	2221721
의 퇴 인	여기구 의원
회 답 일	2026. 10. 16.
추 계 번호	26G50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 (국내생산세액공제)	○ 적격품목의 국내 생산·판매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※ 적격품목: 태양광·풍력 발전, 이차전지, 반도체, 철강,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, 수익성 및 국내 생산기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품목 － 적용요건: 내국인이 직접 생산·판매하고 국내생산요건 및 국내 공급요건 등을 충족 － 공제금액: 적격품목별 공제액에 생산지역별 비율 및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산정 － 공제한도: 생산 관련 비용의 50% 및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%에서 기존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 － 공제율: 2027~2033년 100%, 2034년 75%, 2035년 50%, 2036년 25% － 생산비용·생산량·판매량 입증자료의 보관기간: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0년 － 적격품목의 범위, 공제액 및 생산지역별 비율 등은 시행령 위임사항 ○ 적용기한: 2035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9조 (국내생산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·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 - 안 제29조는 태양광·풍력 발전, 이차전지, 반도체, 철강,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·판매하는 내국인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
 - 적용요건: 직접 생산·판매, 국내생산 요건 및 국내 공급 요건 등 충족,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이어야 할 것
 - 공제금액: 적격품목별 공제액에 생산지역별 비율 및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산정
 - 공제한도: 생산 관련 비용의 50% 및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%에서 기존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
 - 적용기간별 비율: 2027~2033년 100%, 2034년 75%, 2035년 50%, 2036년 25%
 - 적격품목의 범위,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범위, 생산지역의 판정방법,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, 포함 판매 시 공제 적용방법 등은 시행령 위임사항
 - 적용기한: 2036.12.31.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에서 생산·판매되는 적격품목의 생산·판매량과 품목별 공제액 및 생산지역별 비율 등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규모를 산정해야 하나, 시행령 위임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 - 적격품목의 구체적인 범위, 품목별 공제액, 생산지역별 비율 및 국내생산요건 등 세액공제 산정에 필요한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공제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
 - 또한 적격품목별 향후 생산·판매량과 국내생산·국내판매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량, 생산지역별 해당 기업의 분포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세액공제 대상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
 - 따라서 국내생산세액공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우므로,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